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51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주진우 · 조배숙 · 윤한홍
이인선 · 송석준 · 김도읍
곽규택 · 박상웅 · 박정하
유용원 · 추경호 · 김 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구 운영이 지역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지역청년 고용 촉진) ① 특화사업자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특화특구의 주변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역청년”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고용비율과 적용 기준은 업종, 매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변지역의 범위는 특화특구 주변지역의 학생 수, 특화사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3(지역청년 고용 촉진)</u> ① <u>특화사업자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특화특구의 주변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역청년”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고용비율과 적용 기준은 업종, 매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u>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제23조제1항에</u>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변지역의 범위는 특화특구 주변지역의 학생 수, 특화사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